

## 인권경영정책

---

규정번호 : KDNA-B-2401

## 제 1 장 배경

경동나비엔은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은 물론, 더 나아가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경동나비엔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지지합니다.

인권경영정책은 경동나비엔이 추구해온 기업 이념 및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질적인 정책의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아래 명시된 인권경영정책을 준수하고, 더 나아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인권 존중의 가치가 회사 내부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 2 장 인권경영 시스템

경동나비엔은 조직, 프로세스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1. 경동나비엔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원장(CRO, Chief Risk Officer)을 중심으로 전사 리스크 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리스크 역시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규정하여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 고충처리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경우 신고 및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별도로 회사 차원의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제 3 장 인권경영정책

### 1. 차별 금지

경동나비엔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동나비엔은 인종, 나이,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채용, 교육, 승진, 임금, 복리후생, 퇴직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2. 인도적 대우

2.1 경동나비엔은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2 경동나비엔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 위원회를 두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담당자 및 신고 방법을 전사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또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2.3 경동나비엔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기구를 두고 사업장별 담당자 및 신고 방법을 전사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3. 강제노동의 금지

경동나비엔은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신분증, 여권, 노동 허가증 등 근로자의 개인의 신분과 관련한 문서의 양도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한 비용 지불,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 **4. 아동노동의 금지**

경동나비엔은 모든 유형의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경동나비엔은 각 국가의 최저 고용 연령 이하의 인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5. 연소자 근로**

경동나비엔은 18 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며, 연소자가 위험·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6. 결사의 자유 보장**

경동나비엔은 각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혹은 차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근로시간 및 임금**

경동나비엔은 각 국가에서 노동관계 법령상 규정된 근로시간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임직원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경동나비엔은 임직원에게 각 국가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8. 산업안전 보장**

경동나비엔은 근로환경 및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경동나비엔은 안전 총괄 조직(CSO)을 구성하여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안전 교육 등 지속적인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9. 정보 보호

경동나비엔은 임직원,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경동나비엔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두고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10.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동나비엔은 당사뿐만 아니라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까지 인권경영이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협력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